

의안번호	2209655
의 퇴 인	김선교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.
추 계 번 호	25F216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지확대개발에 따른 농지 등 취득 시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－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지확대개발에 따른 농지 등 취득 시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13.1억원, 2028년 13.1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39.3억원(연평균 13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으로 취득세 세수 3년간 3.6억원(연평균 1.2억원) 감소
 -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으로 취득세 세수 3년간 1.2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
 -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으로 취득세 세수 3년간 34.5억원(연평균 11.5억원)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의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8조제1항)	-1.2	-1.2	-1.2	-3.6	-1.2
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8조제2항)	-0.4	-0.4	-0.4	-1.2	-0.4
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교환·분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8조제3항)	-11.5	-11.5	-11.5	-34.5	-11.5
합 계	-13.1	-13.1	-13.1	-39.3	-13.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1항 (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	○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 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	

	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)	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2	안 제8조제2항 (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)	○ 「농어촌정비법」 또는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3	안 제8조제3항 (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)	○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제1항 (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)	○	
2	안 제8조제2항 (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)	○	
3	안 제8조제3항 (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가.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8조제1항)

□ 개정안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4년(2020~2023년)간

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4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- 2019년 2.2억원에서 2020년 1.1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까지 감면실적이 1억원 초반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2020~2023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최근 4년(2020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1.2억원

나. 교환·분합하는 농지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조제2항)

- 개정안에 따른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0.4억원

다.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조제3항)

- 개정안에 따른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11.5억원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8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

- 다만,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
-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2019년 2.2억원, 2023년 1.3억원으로 5년간 총 6.8억원으로 나타남
- 2019년 2.2억원에서 2020년 1.1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까지 감면실적이 1억원 초반대 유지하고 있으며,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액은 1.2억원을 나타냄

[표 2] 최근 5년간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에 따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누적	연평균 (‘20~’23)
취득세 감면액	2.2	1.1	1.0	1.3	1.2	6.8	1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향후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1.2억원, 2028년 1.2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3.6억원(연평균 1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2019년 2.2억원에서 2020년 1.1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까지 감면실적이 1억원 초반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2020~2023년 연평균 감면실적(1.2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향후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에 따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소액	1.2	1.2	1.2	3.6	1.2

나. 교환·분합하는 농지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「농어촌정비법」 또는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
 - 다만,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·분합하는 경우 제외
 -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9년 0.3억원, 2023년 0.1억원으로 5년간 총 1.9억원(연평균 0.4억원)으로 나타남

[표 4] 최근 5년간 교환·분합 농지의 취득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누적	연평균
취득세	0.3	0.3	0.7	0.5	0.1	1.9	0.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향후 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0.4억원, 2028년 0.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.2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(0.4억원)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5] 향후 교환·분합 농지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세수감소액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소액	0.4	0.4	0.4	1.2	0.4

다.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경우와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
 - 다만,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교환·분합하는 임야의 경우 99만 제곱미터 초과 시 50% 감면
 - 적용기간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9년 9.0억원, 2023년 10.6억원으로 5년간 총 57.3억원(연평균 11.5억원)으로 나타남

[표 6] 최근 5년간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추이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누적	연평균
감면실적	9.0	11.9	14.3	11.5	10.6	57.3	11.5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향후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11.5억원, 2028년 11.5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34.5억원(연평균 11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교환·분합하는 임야의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(11.5억원)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7] 향후 교환·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세수감소액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11.5	11.5	11.5	34.5	11.5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